

농업 통상정책 추진방향

- 쌀, DDA 및 FTA를 중심으로 -

2004. 4. 2

농 립 부
(국 제 농 업 국)

목 차

I. 2004년 쌀 협상 대응	1
II. 쌀 협상 관련 질의 응답	5
III. WTO/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12
IV. 최근 FTA 추진 상황	18
<참고자료>	22

I. 2004년 쌀 협상 대응

1. 쌀 관련 UR 협상 결과

- UR협상 결과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2004년까지 10년간 유예하였음 (WTO 농업협정 및 부속서에 규정)
- 관세화유예의 대가로 '95년에는 국내소비량의 1%인 5만1천톤 (35만석)에서 2004년에는 4%인 20만5천톤(143만석)의 의무 수입량을 수입하고 있음
- '05년 이후 관세화 유예의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도록 농업협정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음.
-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하여는 의무수입량 확대 등 추가적인 양보를 통해 협상 상대국가와 합의를 해야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 등으로 인해 관세화 유예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5년부터 기준년도(1986~88년)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의 90%를 부과하고 향후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에서 결정되는 바에 따라 관세 감축이 적용됨
- ※ 관세화시 관세상당치(TE)의 90%만 부과되는 이유 : UR협상의 결과 기준년도('86~'88)의 국내외 가격차인 관세상당치(TE)가 '95년부터 이미 적용된 것으로 가정하고, UR협상의 개도국 감축률인 10년간 10%의 관세 감축을 적용하기 때문임

2. 쌀협상 성격과 여건

- 쌀협상은 UR 농업협상에서 합의된 기본원칙인 관세화에 대한 “한시적 예외조치”의 10년 시한 도래에 따른 후속 협상임
- 쌀협상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며 유예와 관련된 조건을 협의하는 협상임.

※ 관세화를 할 경우에는 쌀협상 절차 없이 WTO 협정문에 따라 계산한 관세율을 WTO에 통보하고 90일 동안 전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를 거치게 됨.

- 쌀 협상은 미국, 중국, 호주 등 관심국가들과의 양자협상이 핵심
 - 관심 국가들과 각각의 개별적인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 협상 결과를 종합하여 공동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DDA 협상일정 지연으로 '04년 세부원칙(Modality)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쌀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세부원칙(Modality) 협상에서 결정될 관세감축과 저율관세 수입물량(TRQ) 증량원칙 등은 관세화시의 수입량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므로 이해득실 분석과 선택의 기준이 됨
- 관세화 유예에 대한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할 경우에는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측면에서 대안간 비교를 통한 최대한의 실리 확보가 중요함.

3. 쌀 협상 추진절차

- 농업협정문에는 ‘이행 마지막 연도(’04년)에 특별대우(관세화유예) 계속여부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동 연도에 종결’하도록 규정
- 일본, 대만의 경우 관세화로 전환한 사례는 있으나, 아직까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사례는 없었음

< 2004 쌀협상 절차 >

- (1) 우리나라가 WTO 사무국에 쌀협상개시 의사통보
- (2) WTO 사무국은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통보
- (3) 관심국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우리나라와 WTO 사무국에 통보
- (4) 관심국가와 양자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
- (5)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로부터 3개월간 검증절차를 거침

- 우리나라는 협상 개시 의사를 '04.1.20일 WTO 사무국에 통보
- '04. 3. 24일 호주가 협상 참가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해옴
- 미국, 중국 등 주요 참여 예상국들은 쌀협상에 대비 내부 체제 및 입장을 정비중인 것으로 관측
- 관심국들이 협상 참가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4월이후 본격적인 양자협상이 진행되며, 3개월간의 검증절차를 고려하여 9월말까지 종결할 예정

4. 쌀협상의 내용

- ☐ 금년 쌀협상의 주요내용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의무수입량 증량 수준 및 유예기간이 될 것임
- ☐ 그러나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무수입량 일부에 대한 민간 수입과 식용사용 허용 등도 유예조건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

5. 정부의 대응방향

- ☐ 우리 정부는 쌀의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에서 1월 20일 쌀 협상 개시의사를 WTO에 통보함
- ☐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 조건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 상대국의 요구조건이 과도하여 관세화 할 때보다 쌀산업에 더 불리한 경우에는 실리 확보방향에서 대응
 - 협상과정에서는 협상 대안간 신축성 유지를 통해 협상력 강화를 추구
- ☐ 쌀협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의 토대위에서 농업인, 농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 ☐ 또한, 쌀협상과 동시에 직불제 확대 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대책, 국내 쌀산업대책도 여론수렴을 통해 준비해 나갈 계획임

II. 쌀 협상 관련 질의 응답

1. 이미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 시장을 개방했는데 왜 또 쌀 협상을 해야 하는가?

- ☐ 지난 '95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형태로 쌀 시장이 일부 제한적으로 개방되어 있었으며, 금년에는 20만 5천톤을 수입해야 함
- ☐ UR협상시 우리 정부는 쌀에 대해 특별조치를 인정받아 10년간 관세화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에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토록 하였던 것임
- ☐ 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는 관세화 유예의 지속 여부에 관해 2004년에 협상을 시작하고 끝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 즉, 지난 10년간 허용된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됨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 관세화유예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 협상하는 것임
- ☐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이고 상대국이 수락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협정문에 규정하고 있음

2. 금년 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입장은?

- ☐ 쌀 협상에서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상대방의 요구들을 고려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임
- ☐ WTO농업협정문에는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에는 상대국이 수용가능한 양보를 하도록 되어 있음.
- ☐ 상대국은 2004년의 경우 소비량의 4%로 되어 있는 의무 수입량의 추가증량 등 유예에 따른 대가를 요구해 올 것임
- ☐ 정부는 이러한 상대국들의 요구조건, DDA 농업협상이 가시화 될 경우의 관세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쌀 산업 피해 최소화에 협상의 최종 목표를 두겠음
- ☐ 협상과정을 가능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인들과 대화를 통해 이해와 의견을 구하면서 협상에 임할 것임
- ☐ 한편, 개방폭 확대에 대비한 쌀산업 보완대책 및 농가소득 안정장치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임

3. 관세화하는 경우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경우, 유·불리는?

- ☐ 관세화를 유예하는 경우와 고율관세로 관세화 하는 경우 모두
지금보다 개방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함
- ☐ 관세화 유예와 고율 관세화 모두 장·단점이 있어 현재 상태로
어떤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없음
 - 관세화 유예시에는 합의된 의무 수입량만 수입되므로 연도별
쌀 수입량의 예측이 용이한 반면, 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을 포함한 상대국의 과도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관세화시에는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과도한
의무수입물량 증량은 피할 수 있으나, 국제가격·환율 변동,
관세감축 등에 따라 수입량이 급변할 가능성이 있음
- ☐ 따라서 예상수입량 등 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고 또한 DDA협상에서 결정될
세부원칙(Modality)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야 함

4. 관세화 유예를 할 경우 연도별 의무수입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지?

- ☐ 관세화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무수입 물량수준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수입방식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함.
- ☐ 또한 DDA협상의 지연으로 의무수입 물량 증량 수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인바
 - 상대국과의 협상 진행과정에서 여러 대안간 분석작업을 통해 우리측 실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음.

5. 쌀을 고율 관세화할 경우 구체적인 관세율은 어느 정도인지?

- ☐ 관세화 유예를 전제로 한 협상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인 수치를 밝힐 단계가 아님
 - 다만, 농업협정에 명시된 계산지침에 따라 '86~'88 평균 국내외 가격차이에 해당하는 관세상당치(TE)에서 1/10을 감한 수준에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임.
- ※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기준년도 국내외 가격차는 700%이었는데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10이 감축되어 금년도 관세율은 630%가 적용됨

6. 향후 쌀 협상절차와 협상대상국은?

- ☐ 협상절차는 ① 협상개시의사 WTO 통보('04.1.20) ② WTO 사무국이 우리 통보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전달 ③ 관심국가는 90일내 협상참가 의사를 표명 ④ 참가의사 표명국가들과 양자협상 진행 ⑤ 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하고 전체 WTO 회원국들로부터 검증절차(3개월)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거침
- ☐ 정부는 지난 1월 20일 WTO에 협상 개시의사를 통보하였으며 4월 20일까지 협상 참가의사를 표시하는 국가들이 협상 대상 국가가 됨

7. 만약 올해 안에 협상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 ☐ 농업협정부속서에는 관세화유예조치가 계속되지 않는 경우 일반관세로 전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협상결렬시 자동적으로 관세화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WTO 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이 관세화이고, 관세화 유예는 한시적 예외조치이므로 구체적인 합의 없이 예외시한이 만료될 경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 협상 시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대국들의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분쟁절차로 갈 경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8. DDA농업협상 지연이 쌀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 ☐ DDA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관세감축 및 의무수입량(TRQ)과 이행계획서 검증과정에서 결정될 개도국지위 여부는 쌀 협상 대안선택의 기준이 되나,
 - 칸쿤각료회의 합의실패 및 DDA 협상 논의 지연에 따라 대안선택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됨
- ☐ 이에 따라, 정부는 상대국의 요구조건, DDA 협상 진행 시나리오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상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9.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금년 쌀 협상의 전망은?

- ☐ 협상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임
 - DDA농업협상의 세부협상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협상대안간의 득실을 분석하기가 곤란하고,
 - 쌀협상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서 어려운 상황임
- ☐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임
 - 이들 상대국이 관세화 유예를 조건으로 지나친 요구를 할 경우에는 협상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 정부는 관세화 유예를 기본입장으로 하여 협상을 추진하되,
 - 관세화 유예나, 관세화냐의 이분법적인 명분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라는 실리를 추구하는데 주안점을 두겠음

10. 쌀 협상에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정부는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단계마다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농업인, 농민단체와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
-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사실 인식을 모두가 같이하면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신축성 유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 쌀 협상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쌀 협상 주요 쟁점들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며, 열린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농업인, 국민과 함께 쌀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III. WTO/DDA 농업협상 동향 및 대응

1. UR농업협상 결과 : '95.1.1. WTO 출범

□ 관세인하(시장접근분야)

- 농산물수입제한조치는 관세화(TE) 하고 이를 매년 감축
 - 우리나라의 쌀은 관세화 예외를 인정받아 10년간('95~'04) 관세화 유예(2004년중 유예 연장 여부 협상)
- 관세화된 품목에 대해 일정물량은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등 저율관세쿼타(TRQ) 제공
- 개방이후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허용

□ 보조감축(국내보조 및 수출보조분야)

- 국내보조는 생산에 영향을 미치거나 가격지지 효과가 있는 감축대상보조와 직접지불 등 감축의무가 없는 허용보조 등으로 분류
- 수출보조는 재정지원액과 물량을 일정기간 감축

□ 개도국 우대

- 감축폭을 완화하고 이행기간도 길게 하는 등 우대조치 적용

		선진국	개도국
감 축 률	관세	평균 36%, 품목별 최소 15%	평균 24%, 품목별 최소 10%
	국내보조	20%	13.3%
	수출보조	36%(재정지출) 21%(물량)	24%(재정지출) 14%(물량)
이행기간		6년('95~2000)	10년('95~2004)

* 우리나라도 UR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확보

2. DDA 농업협상의 진행

□ UR협상 결과의 토대 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것이 DDA 협상의 기본 목표

○ 2001년 도하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원칙과 일정 등이 구체화

* 당초 협상일정 : ① 세부원칙(Modality) 수립('03.3까지) ② 이행계획서 제출('03. 9, Cancun 각료회의까지), ③ 협상완료('04말)

□ 2002년 3월부터는 관세와 보조금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 수립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

○ 수출국들은 대폭적인 시장개방, 수입국들은 점진적인 시장개방 주장

□ 농업협상 그룹회의 Harbinson의장은 그동안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03년 2월과 3월 두차례 세부원칙 초안 배포

○ 동 초안은 UR협상결과에 비해 약 2~3배 감축율이 높으며, 개도국우대가 확대된 것이 특징

* 관세감축율 : 선진국 40~60%(UR36%), 개도국 25~40%(UR24%)

* 국내보조감축율 : 선진국 60%(UR20%), 개도국 40%(UR13.3%)

□ 2003년 3월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한 내 세부원칙 수립 실패

○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국들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지나치게 높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

□ 3월말 Modality 합의도출 실패이후 국제사회는 칸쿤 각료회의(9.10~14)에서의 합의도출 시도

3. 칸쿤 각료회의의 논의 경과

- 칸쿤 각료회의는 세부원칙의 주요 쟁점에 대한 기본골격 (framework)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미국-EU 절충안'을 중심으로 한 각료회의 문서초안을 기초로 의견수렴 후 새로운 초안 제시(9.13)
 - 관세감축의 경우 농산물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UR방식 (점진적 감축), 스위스공식(급격한 감축), 무관세 등 각기 다른 방식에 따라 감축토록 하고, 관세상한을 설정
 - 국내보조는 총액 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보조상한을 설정 (UR 당시에는 보조 총액만을 대상으로 감축)
 - 개도국의 경우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수준 및 이행기간을 우대 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은 계속 허용
- 각료회의 농업협상은 수입국그룹(G-10)과 수출개도국그룹(G-22)이 미국-EU 절충안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형태로 진행
 - 우리나라는 관세상한 문제, TRQ 증량 문제, 특별품목(SP)의 유지 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
- 9. 14 「싱가폴 이슈」 분야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일괄타결 원칙에 의거 농업분야 협상 진행 도중에 의장이 각료회의 합의 도출 실패를 선언

4. 칸쿤 각료회의 이후 협상동향 및 향후 협상전망

- '03.10.14 대사급 비공식 협의에서 DDA 협상을 재개키로 하고 제네바 프로세스가 진행됨
 - 농업, 면화, 비농산물, 싱가포르 이슈 4개 분야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10. 25일 농업분야부터 논의 시작
- 12.15~16 개최된 일반이사회에서도 큰 진전없이 종료
 - 일반이사회 논의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구체적인 협상시한 설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만, '04년초에 협상을 재개하며, 칸쿤 각료회의 문서초안(테르베즈안)을 향후 협상의 출발점으로 한다는 데는 공감대 형성
- DDA 협상은 금년 2월에 각 협상기구 의장단 선임을 마무리했으며 3월부터 회의를 재개할 계획
 - 오시마 일본대사가 일반이사회 의장으로 Groser 뉴질랜드대사가 농업협상그룹 의장으로 선임됨
- 3.22~26 개최된 WTO 농업위원회를 계기로 그동안 진전이 없던 농업 협상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재개
 - 아직은 각국이 기존 입장에서 신축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 금년 7월말 이전까지 세부원칙 기본골격(Modality framework)을 수립해야 한데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7월말까지 집중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계획
- 미국과 EU의 국내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금년 하반기에는 큰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대선('04.11), EU 새로운 집행위 출범('04.11)

5. 그동안 우리나라 DDA협상 대응현황

□ 농업협상 전반기에 구축된 수출·입국간 대립구조하에서는 NTC그룹의 핵심 일원으로 Cairns 그룹과 대응

-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공론화를 통해, 중요한 협상의 고려요인으로 부각시켜 Doha 선언에 명문화하고, 이후 각종 초안에서 예외조치 근거로 활용

□ Modality초안 배포이후 다변화된 농업협상 구도변화에 맞추어 비공식그룹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전략 수립 및 대응

- NTC그룹(6개국) :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 확대 반영
- 수입국그룹(10개국) : UR방식에 의한 관세와 보조금 감축
- SP개도국그룹 : 특별품목(SP) 제도 방어 및 운용상 신축성 확보
 - * Cancun 각료회의에서는 관세상한 문제, TRQ 증량문제, 그리고 SP유지 등에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각 그룹과 선별적으로 공조 대응

□ OECD, WTO 등에서 선진국들의 개도국 세분화 시도 저지

- OECD 무역위원회에서 개도국 세분화 보고서 채택 저지
- WTO 관련회의에서 제기된 미국, EU 등의 시도에 강력 대응 중

□ 적극적인 홍보 및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유도

- 언론을 통한 홍보 및 E-mail 발송(수시)을 적극 추진
- 농업통상정책협의회, 시·도 순회 설명회 등 수시 개최
- 국회의원 및 농민단체대표의 WTO 방문활동을 지원

□ DDA협상 타결이후에 대비하여 새로운 "농업·농촌종합대책" 수립 추진

6. 양허협상과 개도국 지위유지 문제

- 양허협상은 확정된 Modality에 기초하여 품목별 이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이해관계국의 검증과 협의 절차를 거쳐 확정
 - Modality협상은 그룹별 협상 성격이 강한 반면, 양허협상은 개별 이해당사국간 양자협상의 성격이 강함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협상대상국은 Modality협상 과정에서 수입국의 반대편에 있었던 미국, 중국, 호주 등 수출국들임
- 개도국지위 유지 문제는 Modality 협상에서 보다는 이행 계획서 제출후 양허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
 - 우리의 경제성장 및 국제적 위상제고로 인하여 국제적 여건과 여론은 부정적이나, 우리의 의무부담 측면에서는 양보대상이 아님
- 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입장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다자차원에서는 이를 기정 사실화 하면서 당당한 자세로 대응
 - 발전단계별 개도국 세분화논의가 진전되지 않도록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응
 - Modality 협상 종료 이후에는 개도국지위 유지를 전제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

IV. 최근 FTA 추진 상황

1. 한·일 FTA

□ 추진경과

- '03.10월 하순 APEC 정상회의 기간중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 협상개시 선언
- 제1차 한-일 FTA 협상('03.12.22, 서울)
 - 협상그룹 확정 및 향후 추진일정 협의(매 2개월 단위로 협상 진행)
- 제2차 한-일 FTA협상('04.2.23~25, 동경)
 - 협상그룹별 주요쟁점 및 입장확인
- 4월에 개최될 제3차 협상에서 협정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4차협상(6월)부터 관심품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

□ 한·일 양국 입장

- 일본은 한·일 FTA를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함
- 우리는 제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다소 신중한 입장에서 접근해 왔으나 중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기대

□ 예상 효과분석(KREI, 2001.10)

- 국가 전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나, 농업부문 부가가치 약 14% 증가(기계장비, 철강 등 제조업 분야 피해 예상)
- 주요 수출농산물 품목별 수출증대 효과 분석결과
 - 주요 10대 수출 농산물에 연간 5,800만 달러 수출증대 효과 예상
 - * 10대 주요농산물 : 김치, 토마토, 가지, 고추, 장미, 백합, 밤, 국화, 오이, 돈육

□ 협상 전략

- 농업부문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되 국민적 공감대 토대 위에서 협상추진
- 실질적인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을 우선 순위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되 일본이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 협상 대비 추진상황

- 상품양허협상전략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농경연, '03.12- '04.4)
- 한·일 FTA 와 한국농업 세미나 개최 (2.16)
- 품목국 양허안 작성 작업
 - 품목별 D/B 구축, 일본현지조사 실시
 - 품목별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수출업체 등으로 자문그룹 구성하여 협상과정 설명 및 의견수렴
- 협상진행상황 설명 및 홍보
 - 통상정책협의회 개최 (4월초순) : 양허안 작성방향 설명
 - 농민단체 및 지역 설명회 개최
- FTA 전략회의 (4월중순) : Request 안 및 원산지기준 확정
- FTA 전략회의 (7월초) : 우리측 양허안(Offer list) 확정

2. 한 · 싱가포르 FTA

□ 추진경과

- 2002.11 시드니 WTO 각료회의 계기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합의
 - 금년 3월부터 3차례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개최, 연구결과를 정리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여 양국 정부에 제출(10.7)
 - 공동연구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싱가포르 정부와 협의한 뒤 '03.10 한 · 싱가포르 정상회의시 FTA협상 개시 선언
- 3.31현재 2차례 협상을 개최하여 협정문 협의 진행중
 - 1차협상 (싱가폴, '04.1) : 협정문 협의 및 주요쟁점 확인
 - 2차협상 (서울, '04. 3.24-26) : 협정문 협의(계속)

□ 농업부문 영향

- 싱가폴은 농업규모가 매우 작아(GDP의 0.1% 미만) FTA체결시 우리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농지규모 : 807ha수준)
 - 주요생산품('02) : 계란(361백만개), 신선채소(17천톤), 화훼(60백만불)
 - 양란이 일부 수입된 적이 있으나, 최근 국내산으로 거의 대체
 - (2000년) 13천불 → (2002년) 960불

□ 대응방향

- 민감품목이나 고율관세 품목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에서 예외 추진
 - 제3국과의 FTA를 감안하여 최대한 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 협상 대비 추진 상황
 - 싱가폴 현지조사 실시('03.1.), 품목별 D/B 구축
 - FTA 전략회의 (4월초순) : Offer 안 및 원산지기준 확정

3. 한 · 중 · 일 FTA

- '99년 ASEAN+3회의시 한·중·일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3국 국책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실시
- '03 ASEAN+3 정상회의(10.7~8) 기간 중 합의한 한·중·일 공동성명서에서는 3국간 FTA의 영향에 대한 민간연구기관들의 연구진전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시기에 3국간 경제적 파트너십 방향을 모색키로 함
- 한·중·일 FTA체결에 대해서 관련3국 모두의 의지와 준비 상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음

4. 한 · ASEAN FTA

- '01, '02년 ASEAN+3회의에서 ASEAN 측은 한국에 대해 FTA 추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
- 우리측은 한·중·일과 ASEAN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대 창설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하는 등 농업부문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
 - * 중국·일본·인도는 FTA추진을 위해 경쟁적으로 ASEAN에 접근
- '03년 ASEAN+3 회의에서 우리는 전문가그룹 공동연구제안
-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에 따라 ASEAN과의 FTA 추진방식 (framework)이 결정될 전망(전체 또는 ASEAN 국가 개별추진)
- FTA 체결시 경제적 실익이 있으나, 일부산업(1차산업, 가공식품 등) 및 농업부문에서 어느 정도 피해 예상

< 참고자료1 >

농업협정 제5부속서 쌀 협상 관련조항

제2절

7. 제4조제2항의 규정은 또한 어느 개발도상회원국의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식이면서 그리고 제1항가호로부터 제1항라호까지에 명시된 관련품목에 적용되는 조건에 추가하여 아래 조건에 합치하는 1차농산물에 대하여는 세계무역기구협정 발효와 동시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 제1부제1절 B에 명시된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이행기간 제1차년도의 초부터 동 품목의 기준기간의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며, 이행기간 제5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이행기간 제6차년도 초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최소접근기회는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2%에 해당되며, 제10차년도 초까지 기준기간의 상응하는 국내소비량의 4%로 매년 균등하게 증가된다. 그 이후 이 공식으로 인한 제10차년도의 최소접근기회 수준은 관련 개발도상회원국의 양허표에 유지된다.
 - 나. 이 협정의 다른 품목에 대하여 적절한 시장접근기회가 부여되었다.
8.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가 종료된 이후 제7항에 명시된 특별대우의 계속이 가능한지 여부의 문제에 관한 협상은 이행기간 개시이후 제10차년도 그 해의 시간범위내에 개시되고 종결된다.
9. 제8항에 언급된 협상의 결과 회원국이 특별대우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동 회원국은 동 협상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추가적이고 수락가능한 양허를 부여한다.
10. 제7항에 따른 특별대우가 이행기간의 개시로부터 제10차년도 종료 이후 계속되지 않는 경우, 관련 품목은 이 부속서의 첨부물에 규정된 지침에 따라 계산되는 관세상당치에 기초하여 설정된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동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 다른 측면에서는 제6항의 규정이 이 협정에 따라 개발도상회원국에게 부여된 관련 특별 및 차등대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